

# 사단법인 한국부식학회 정관

1978년 6월 12일

과학기술처장관허가

## 제 1 장 총 칙

## 제 2 장 회 원

### 제 1 조(목적)

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식, 방식 및 그 응용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 보급을 도모하여 산업진흥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 2 조(명칭)

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부식학회(이하 "본회"라 한다)라 정한다.

### 제 3 조(사무소의 소재지)

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산 76-561번지에 둔다.

### 제 4 조(사업)

본회는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

1. 연구발표회, 학술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
2. 학술간행물 및 도서의 간행과 배포
3. 부식과학기술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국제교류
4. 연구의 장려 및 우수한 업적의 표창
5.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

### 제 5 조(법인 공여이익과 수혜자)

본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공여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.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.

### 제 6 조(지부 및 분회의 설치)

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.

### 제 7 조(위원회의 설치)

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### 제 8 조(명예회장, 고문)

- ① 본회에는 명예회장과 고문을 둘 수 있다.
- ② 명예회장과 고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이를 추대한다.

### 제 9 조(회원자격)

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부식과 방식 및 그 응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자로 정회원 2인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 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### 제 10 조(회원의 종류)

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.

#### 1. 정회원

부식과학 및 그 응용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을 가진자. 다만 정회원중 종신회비를 납부한자는 종신회원으로 한다.

#### 2. 학생회원

대학(초급대, 대학원)에서 부식 과학 및 그 응용에 관련된 학문을 수학하고 있는자.

#### 3. 단체회원

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학교, 도서관, 연구소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또는 기관.

#### 4. 특별회원

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본회의 사업수행을 지원 하는 사업단체 또는 개인.

#### 5. 명예회원

부식과학 및 그 응용분야에 공적이 현저하며 본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로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자.

### 제 11 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
### 제 12 조(회원의 탈퇴)

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
### 제 13 조(회원의 제명)

본회의 회원중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
1.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
2.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
3. 본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

제 3 장 임 원

제 4 장 총 회

제14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
본회는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(회장 1인, 부회장 2인 포함)와 2인의 감사를 둔다.

제15조(임원의 임기)

-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- ②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할 수 있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.

제16조(임원의 선출)

- ①임원은 정회원중에서 총회가 선출하며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.
- ②임기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추인과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17조(회장, 부회장의 선출과 임기)

- ①회장과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.
- ②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이사로 제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18조(회장, 부회장의 직무)

-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의 의장이 된다.
-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유고시에는 부회장중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9조(이사의 직무)

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제20조(감사의 직무)

-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- 1. 법인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.
  - 2. 이사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.
  - 3. 제 1 호 및 제 2 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,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.
  - 4. 제 3 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.
  - 5. 본 학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, 이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, 이사회에서 진술하는 일.
  - 6. 총회 및 이사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.

제21조(총회의 기능)

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- 1. 임원의 선출에 관한사항
- 2. 정관변경에 관한사항
- 3. 정관시행세칙의 승인
- 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5. 사업계획의 승인
- 6. 기타 중요사항의 의결

제22조 (총회의 소집)

-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 회 10월중에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.
  - 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
  - 2. 이사의 결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요구가 있을때
- ②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회원에게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총회는 제 2 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

제23조(총회의 의결 정족수)

- ①총회는 재적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.
-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
제24조(총회소집의 특례)

- ①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-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때.
  - 2. 제20조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때.
  - 3.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때.
- ②총회소집권자가 결의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제 2 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.

제25조(총회의결 제적사유)

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사항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산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.

### 제 5 장 이 사 회

#### 제26조(이사회회의 기능)

이사회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사항
3. 예산결산의 의결에 관한 사항
4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5.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6. 기타 중요사항

#### 제27조(의결 정족수)

①이사회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면 개최하지 못한다.

다만 출석할 수 없는 이사가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.

②이사회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#### 제28조(이사회회의 소집)

①이사회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이사회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이사회회는 제 2 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
#### 제29조(이사회회의 소집의 특례)

①회장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1.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때
2. 제20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.

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는

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.

③제 2 항에 의한 이사회회는 출석이사 중 년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.

#### 제30조(서면결의 금지)

이사회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

### 제 6 장 재 산 및 회 계

#### 제31조(재정)

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1. 회원의 회비
2. 사업에서 부수되는 수입
3. 재산에서 생기는 수익
4. 기타의 수입

#### 제32조(회계년도)

본회의 회계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.

#### 제33조(세입세출 예산)

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전 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.

#### 제34조(예산외의 채무부담 등)

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### 제 7 장 보 칙

#### 제35조(해산)

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의 3 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#### 제36조(해산법인의 재산귀속)

본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하거나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동일 목적을 가진 유사단체에 기증한다.

#### 제37조(정관개정)

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 분지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#### 제38조(시행세칙)

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#### 제39조(공고사항 및 방법)

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서울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.

1.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

2. 법인운영에 관한 사항.

제40조(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)

본회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.

직 위	성 명	주 소	임기
회 장	전민제	서울시종로구신교동6-28	2년
부회장	김신극	서울시용산구신창동 4가76-13	"
부회장	조중수	서울시관악구대방동159-428	"
이 사	전응상	서울시종로구낙원동27	"
	권순영	경남울산시약사동707번지	"

감 사	이범성	서울시관악구상도동174-13	"
	이주성	서울시성동구중곡동271-3	"
	윤창구	서울시성북구하월곡동산39-1	"
	남중우	서울시관악구대방동357-2	"
	함병소	서울시영등포구신도림동851-69	"
	김면섭	서울시성동구성수동 1가668-10	"

부 칙

1.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날 (1978년 6월 12일) 로 부더시행한다.

